

2025/26

선박안전관리사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기사, 해양경찰 등

엠북 해양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- ★ 2시간 13분 완성
- ★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
도서명 : 선원법과 선박직원법

ISBN : 979-11-7393-064-5

발간일 : 2025-08-25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1,000원



선원법과 선박직원법

[목차]

제1권 선원법(p3)

제2권 선박직원법(p209~251)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제1권 선원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6)

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(p19)

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(p32)

제4장 선원근로계약(p40)

제5장 임금(p65)

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(p83)

제7장 유급휴가(p99)

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(p105)

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(p120)

제10장 재해보상(p125)

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(p137)

제12장 취업규칙(p152)

제13장 감독 등(p156)

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

해사노동적합선언서(p169)

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(p179)

제16장 보칙(p184)

제17장 벌칙(p191)

[약어]

해수부는 해양수산부

장관은 해수부장관

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관리업자는 선원관리사업자

제1장 총칙

1~5조

1. 목적

- 선원의 직무, 복무, 근로조건 기준, 직업안정, 복지, 교육훈련 등 정함
- 선내 질서 유지,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/향상, 자질 향상 도모

2. 정의

1) 선원

- 법 적용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자

- 다음 제외

· 선박검사원

· 선박 수리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,
작업원

· 도선사

· 항만운송사업, 항만운송관련사업 위해
고용하는 근로자

· 실습선원

· 선박 공연 등을 위해 일시 승선 연예인

· 상기에 준하는 선박소유자 단체, 선원 단체
대표자와 협의 거쳐 장관이 고시하는 자

2) 선박소유자

- 선주, 선주로부터 선박 운항 책임을

위탁받고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, 책임,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, 대리인, 선체용선자 등

3) 선장

- 해원 지휘/감독, 선박 운항관리 책임 지는 선원

4) 해원

-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 아닌 선원

5) 직원

- 항해사, 기관장, 기관사, 전자기관사, 통신장, 통신사, 운항장, 운항사, 해원(어로장, 사무장,

의사)

6) 부원은 직원이 아닌 해원

7) 유능부원(18세 이상)

가) 갑판유능부원은 갑판부 항해당직
부원으로서

- 18개월 이상 승무 또는

- 12개월 이상 승무 및 유능부원교육과정
이수

나) 기관유능부원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으로서

- 12개월 이상 승무 또는

- 6개월 이상 승무 및 유능부원교육과정 이수

8) 예비원

- 선박 근무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 중이 아닌 선원

9) 항해선

- 내해, 항만구역 내 수역,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영해 내 수역만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

10) 선원근로계약(이하 선원계약)

- 선원은 승선해 선박소유자에 근로 제공, 선박소유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

1) 임금

- 선박소유자가 근로 대가로 선원에 임금, 봉급, 명칭 불문 지급하는 모든 금전

2) 통상임금

- 선원에 정기적/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나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, 일급금액, 주급금액, 월급금액, 도급금액

3) 승선평균임금

-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승선기간(3개월 초과시 최근 3개월로 함)에 선원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승선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
-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

승선평균임금으로 봄

4) 월 고정급

-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
임금으로 지급

5) 생산수당

-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 지급하는 임금으로
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, 취업규칙,
선원계약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
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

6) 비율급

-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 지급하는

임금으로서, 어획금액에서

공동경비(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

직접 경비)를 뺀 금액을 단체협약, 취업규칙,

선원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

금액

7) 근로시간

- 선박을 위해 선원이 근로하도록 요구되는
시간

8) 휴식시간

- 근로시간 외의 시간

- 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제외

9) 해양항만관청(이하 관청)

가) 장관

나) 해수부 소속 기관 장

- 지방해양수산청장,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,
해양수산사무소장

20) 선원신분증명서

- 국제노동기구의 '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
관한 협약'에 따라 발급하는 선원 신분 증명
문서

1) 선원수첩(이하 수첩)

- 선원의 승무경력, 자격증명, 근로계약 등
수록 문서

2) 해사노동적합증서(이하 적합증서)

- 선원의 근로/생활 기준 검사 결과 법과 해사노동협약상 인증기준에 적합함 증명 문서

3) 해사노동적합선언서(이하 선언서)

- 해사노동협약 이행 국내기준을 수록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채택한 조치사항이 법과 해사노동협약 인증기준에 적합함 승인 문서

4) 실습선원

-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해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해 실습하는 자

3. 법 적용 범위

가. 특별한 규정 없으면 한국 선박(어선 포함), 한국 국적 취득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,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승무 선원, 선박소유자에 적용

나. 다음 선박 승무 선원과 선박소유자에 적용안함

- 1) 항해선이 아닌, 총톤수 5톤 미만 선박
- 2) 호수, 강이나 항내만 항행(예선은 제외)
- 3) 평수구역, 연해구역, 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(운반선 포함)

4) 부선(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해 등록된
부선은 제외)

다. 실습선원에 선원 규정 적용

4. 선원노동위원회

- 특별노동위로서 장관 소속으로 둠

5.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고,
선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6월 셋째
주 금요일을 **선원의 날**로 정함

- 국가/지자체는 기념행사 가능

6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가)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 중
다음 적용

- 근로자, 사용자, 근로의 정의
- 근로조건의 기준/결정/준수, 균등한 처우
- 폭행의 금지, 중간착취의 배제, 공민권
행사의 보장
- 취업 방해의 금지
- 임금의 청구
- 임산부의 보호
-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

나) 선원 교육훈련은 평생직업능력법 적용안함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

6~21조

1. 지휘명령권

- 선장은 해원 지휘/감독, 선내에 있는 자에
선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

2. 출항 전의 검사/보고의무 등

가) 출항 전 다음 검사등(검사, 점검)

-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
- 선박에 화물이 실린 상태
- 항해에 적합한 장비, 인원, 식료품, 연료

구비/상태

-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다음 사항
- 항로/항해계획의 적정성
- 선박 항해 관련 기상/해상 정보
- 비상배치표, 비상시 조치할 해원의 임무

숙지상태

- 선장 인정 사항

나) 선박소유자 등에 검사등 결과 보고

다) 검사등 결과, 문제 있으면 지체없이

선박소유자에 조치 요청

- 선박소유자는 선박,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